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■ 조례명

-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■ 주요내용

- 조례 제1510호(1997. 7. 8)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제13조 (의견진술)

### ■ 개정사유

- 행정 절차법이 '9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 청구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
### ■ 검토결과(의견)

- 동 조례중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,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의견진술)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 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시 는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(삭제)</p>